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3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8.2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.8.27.
- 다. 상정일자 :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3.9.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의 택 청소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“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” 에 의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 장치를 마련하였으며,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장치 마련(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)
- 2) “기금운용관” 을 “주민생활국장” 에서 “청소행정과장” 으로 변경

(안 제12조제2항) : 행정안전부 “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”에 의함

3) 그 밖에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“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”에 따라 안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이해관계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